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대안교육기관 포함〉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74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대안교육기관 포함(조정훈의원안) ..... | 2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1. 14.

다. 회 부 일 : 2025. 11. 1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특례기부금과 그 밖의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안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같은 교육기관인 대안교육기관은 이러한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4조).

### Ⅲ. 검토의견

#### 1.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대안교육기관 포함(조정훈의원안)

| 현행                                                                                                                                                                                                                                                                                                                                                                                                                                                                                                                                                                                                                                                                                                                                        | 개정안                                                                                                                                                                                                                                                                                                                                                                                                                                                                                                                                                                                       |
|-------------------------------------------------------------------------------------------------------------------------------------------------------------------------------------------------------------------------------------------------------------------------------------------------------------------------------------------------------------------------------------------------------------------------------------------------------------------------------------------------------------------------------------------------------------------------------------------------------------------------------------------------------------------------------------------------------------------------------------------|-------------------------------------------------------------------------------------------------------------------------------------------------------------------------------------------------------------------------------------------------------------------------------------------------------------------------------------------------------------------------------------------------------------------------------------------------------------------------------------------------------------------------------------------------------------------------------------------|
| <input type="checkbox"/> 손금에 산입하는 50% 한도 특례기부금(제24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li> <li>○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가액</li> <li>○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li> <li>○ 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국제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장학재단 등</li> <li>- &lt;신설&gt;</li> </ul> </li> <li>○ 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li> <li>○ 사회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li> </ul> <input type="checkbox"/> 손금에 산입하는 10% 한도 일반기부금(제24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li> </ul> | <input type="checkbox"/> 손금에 산입하는 50% 한도 특례기부금(제24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과 같음)</li> <li>○ (현행과 같음)</li> <li>○ (현행과 같음)</li> <li>○ 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과 같음)</li> <li>-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li> </ul> </li> <li>○ (현행과 같음)</li> <li>○ (현행과 같음)</li> </ul> <input type="checkbox"/> 손금에 산입하는 10% 한도 일반기부금(제24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대안교육기관의</li> </ul> |

| 현 행        | 개정안                                                                                                                                   |
|------------|---------------------------------------------------------------------------------------------------------------------------------------|
| - 특례기부금 제외 | <u>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u><br>- (현행과 같음)<br>○ 시행일: 2026. 1. 1.<br>○ 적용례: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 조정훈의원안 2025. 11. 14. 발의(의안번호 14274)

□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산입한도가 50%인 특례기부금에 추가하고, 대안교육기관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산입한도가 10%인 일반기부금에 추가하려는 것임.

□ 기부금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함.

기부금의 지출은 법인의 순자산 감소를 초래하지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손금의 요건으로서 사업관련성을 충족하지 못해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기부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익성의 정도 및 기부주체 등에 따라 일정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현행법 제24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기준으로 ① 특례기부금, ② 일반기부금 및 ③ 위 2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기부금 유형별 범위]

| 구 분   | 범 위                                                                                                                                                                        |
|-------|----------------------------------------------------------------------------------------------------------------------------------------------------------------------------|
| 특례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사립학교 등 교육기관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          |
| 일반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법인 등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 |
| 기타기부금 |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

① 특례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②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 등 공익성 있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으로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손금 산입한 특례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

적기업<sup>1)</sup>이 지출한 일반기부금에 대해서는 20%p 높은 30%의 손금 산입한도를 적용하며, ③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있음.

### [법인기부금 제도 연혁]

| 시행연도 | 주요 변경사항                                                                                                                 |
|------|-------------------------------------------------------------------------------------------------------------------------|
| 2005 | ·법정기부금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축소(100→75('06~'08)→50%('09~)),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 기간 신설(1년)                                 |
| 2011 | ·지정기부금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 확대(5→10%), 기부금 구분 체계 간소화, 기부금을 구분하는 공익성 기준 명확화                                                     |
| 2012 | ·법정기부금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 기간 확대(1 → 3년)                                                                          |
| 2014 | ·법정기부금 소득공제(손금산입) 한도액 초과금액의 이월공제 기간 확대(3 → 5년)                                                                          |
| 2018 |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                                                                                     |
| 2019 |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확대(10%→20%)<br>·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 확대(5년→10년)                                               |
| 2020 |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                                                                |
| 2021 |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던 용어 삭제<br>(법정기부금을 50% 한도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을 10% 한도 기부금으로 지칭)<br>·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 규정 |
| 2023 | ·50% 한도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10% 한도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명칭 변경                                                                         |
| 2025 | ·특례기부금 대상에 의료기술협력단 기부금 추가                                                                                               |
| 2026 | ·사회적기업이 지출하는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확대(20%→30%)                                                                                    |

####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2021년에 제정되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등록제가 실시되었음.

동 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법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함. 대안교육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임.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와 교지 등 시설 및 설비와 목적, 명칭, 위치 등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함.<sup>2)</sup>

##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교육목표
5. 학칙
6.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8. 교직원 배치계획서

2025년 4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264개의 대안교육기관이 등록되어 있음. 2024년 10월 기준으로 대안교육기관 학생 수는 11,772명임.

[ 시도교육청별 대안교육기관 등록현황('25.4.1.기준) ]

(단위 : 개)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
| 75 | 9  | 7  | 8  | 12 | 11 | 2  | 1  | 72  |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 8  | 6  | 9  | 7  | 11 | 11 | 7  | 8  | 264 |

자료: 교육부 홈페이지

[ 대안교육기관 학생 수('24.10.기준) ]

(단위: 명)

| 구분  | 초     | 중     | 고     | 초·중<br>(통합) | 중·고<br>(통합) | 초·중·고<br>(통합) | 기타  | 합계     |
|-----|-------|-------|-------|-------------|-------------|---------------|-----|--------|
| 학생수 | 2,819 | 1,820 | 1,797 | 616         | 1,235       | 2,796         | 689 | 11,772 |

자료: 교육부

□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 지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취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외국 대학 입학에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4.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첫째,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안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손금에 산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임. 대안학교는 시·도 교육감의 인가를 획득하여야 함.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1)에 따라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대안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됨.<sup>3)</sup>

---

3)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

5. 각종학교

그리고 동조 제3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대안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대안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인정됨.<sup>4)</sup>

그런데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 모두 대안교육이라는 동일한 목적 하에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반면,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

---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비교]

| 구분       |      | 대안학교(각종 학교)                                                                                              | 대안교육기관                                                                    |
|----------|------|----------------------------------------------------------------------------------------------------------|---------------------------------------------------------------------------|
| 개요       | 목적   | ▶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실시 | ▶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 실시 |
|          |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          | 현황   | 52개교<br>(’25. 4.)                                                                                        | 267개 등록<br>(’25. 9.)                                                      |
| 운영       | 학력인정 | 학력 인정                                                                                                    | 학력 미인정                                                                    |
|          | 모집단위 | 지역/전국단위                                                                                                  | 자율                                                                        |
|          | 학생선발 | 학칙으로 규정                                                                                                  | 자율                                                                        |
|          | 교육과정 | 학칙으로 편성<br>(국어, 사회 교과는 교육과정 상 수업시수 50% 이상)                                                               | 자율                                                                        |
| 재정       | 재정지원 | 재정결함보조, 목적사업비 등 시도별 상이                                                                                   |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시도별 상이                                                    |
|          | 수업료  | 시도조례 또는 자율로 정함                                                                                           | 자율로 정함                                                                    |
| 인가, 지정 등 |      | 교육감 인가                                                                                                   | 교육감 등록                                                                    |

자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3523호), 2025. 11.

둘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 지출이 활성화되면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여건 개선으로 교육활동의 질과 교육환경이 제고될 수 있음.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교원, 학생 및 학부모 실태조사’(교육부)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 교원을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해 정책별로 필요한 정도를 물어본 결과, ‘교육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3.85점으로 가장 높았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육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3.54점으로 제일 높았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육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3.89점으로 제일 높았음.

이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적 여건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파악됨.

최근 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중 일부가 지원근거(조례 등) 부재로 급식비, 교복비, 교과서 등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음.<sup>5)6)</sup>

개정안과 같이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에 대해 손금산입을 허용하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인의 기부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음.

- 다만,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은 기능과 지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을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에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반면,<sup>7)</sup> 대

5)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및 학부모 부담 완화방안, 국민권익위원회(2025.12.22.)

6) 급식비 지원비율은 78%, 교복비 지원비율은 56%, 교과서 지원비율은 27.5%였음

7)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학력인정) 국·공립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를 졸업한 자는 국·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시 계획된 학교 급별 또는 사립 대안학교의 설립인가 시

안교육기관은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음. 대안교육 기관의 학생들은 정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검정고시 등을 통해 별도로 학력을 취득해야 함.

그리고 대안교육기관과 달리 대안학교는 교육과정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하는 규제를 적용받음.<sup>8)</sup> 반면, 대안학교는 이와 같은 교육과정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

|              |
|--------------|
| 문 의 처        |
| 02)6788-5155 |

---

표시된 인정학력에 따라 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8)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교육과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하여야 한다.